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 방 전 직 교 육 원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,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, 과태료 부과 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근거 마련(안 제4조제3항)

- 1) 현행 보조금 관련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그 근거를 규정할 필요
- 2) 보조금 지급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집행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나. 국방전직교육원의 수료자 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조회 협조근거 마련
(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, 제11조 개정)

- 1) 국방전직교육원이 유선 확인 등으로 관리하던 기존 수료자 취업확인 방식을 고용보험 체계를 이용한 자격득실 확인 등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제공 협조 근거 신설

2) 고용보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원 수료자의 취업성과를 객관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다.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 축소 및 누적 차수 관련 규정 명확화(별표 가~라 및 2. 개별기준 개정)

- 1) 과태료 부과시 차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, 누적 회차 적용규정이 미비하여 과잉행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
- 2) 별표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, 가중된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법성 제고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협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이 제1항에서 요구한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 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람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람이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직종부호
2. 1주 소정 근로 시간
3. 월평균 보수액
4. 사업장 명칭
5. 사업장 소재지

6. 자격취득일

7. 계약 종료 연월(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한한다)

제11조의 제목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”를 “(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제1항”을 “법 제22조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“부과기준”을 “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부과처분을 한 날과”를 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”를 “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 원)	
	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
가.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9조 제1항	300	500
나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9조 제2항	200	300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보조금의 요구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보조금의 요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이 제1항에서 요구한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0조(업무협조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업무협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 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람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람이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직종부호 2. 1주 소정 근로 시간

제1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교육원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협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1조(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-- ----- 법 제2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(별표)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	가. -----과태료의 가중된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----- -----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-----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<u><신 설></u>	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

을 하는 경우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 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	법 제29조 제1항	300	500	1,000

다. -----

라. -----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 원)	
		1회 위반	2회 이상 위반
가.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	법 제29조 제1항	300	500

는 기피한 경우					또는 기피한 경우			
나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9조 제2항	200	300	500	나.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9조 제2항	200	3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36